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 . . . (제 회)	

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
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박상우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시설물 관리주체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이 개정(법률 제20553호, 2024. 12. 3. 공포, 2025. 12. 4. 시행)됨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실시 대상, 긴급안전조치 및 보수·보강 등 의무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,

시설물 보수·보강 의무이행 기한 및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구성·운영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시설물 관리주체의 원활한 안전관리를 도모하고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정밀안전진단 실시 대상 규정(안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)
- 안전등급 D·E등급으로 지정된 제2종시설물 및 준공 후 30년이 경과된 이후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제2종시설물이나 제3종시설물 중 안전등급 C·D·E등급으로 지정된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 실시 의무를 규정함
- 나. 긴급안전조치 및 보수·보강 등 의무 대상 규정(안 제18조의2 신설)

시설물이 안전등급 D·E등급으로 지정된 경우, 긴급안전조치 및 보수·보강 등을 실시하도록 하여 취약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

다. 시설물의 보수·보강 의무 기한 단축(안 제19조 개정)

시설물의 보수·보강 등 조치 의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조치에 착수하고,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착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취약시설물의 신속한 보수·보강을 통한 공중의 안전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

라.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요건 변경(안 제37조 개정)

현행 규정은 시설물 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3명 이상인 경우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, 개정 규정은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1명 이상인 경우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, 위원회의 조사 대상 사고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
일부개정령안

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법 제12조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종시설물”이란 정밀 안전점검 결과 D등급(미흡) 또는 E등급(불량)으로 지정된 제2종시설물(건축물은 제외한다)을 말한다.

③ 법 제12조제3항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으로 지정된 경우”란 C등급(보통), D등급(미흡) 또는 E등급(불량)으로 지정된 경우(건축물에 대해 해당 안전등급이 지정된 경우는 제외한다)를 말한다.

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8조의2(긴급안전조치 및 보수·보강 등 의무 대상 안전등급 기준) 법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”이란 D등급(미흡) 또는 E등급(불량)을 말한다.

제19조 중 “조치명령”을 “조치명령이나 영 제18조의2에서 정하는 안전

등급으로의 지정”으로, “2년”을 “1년”으로, “3년”을 “1년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거나 철거 후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기한 내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완료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3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58조제1항 및 제4항”을 “법 제58조제1항”으로, “각각”을 “시설물이 붕괴·파손되거나 쓰러지는 등의 사고에 의해 발생한 피해 중”으로, “시설물피해 또는 인명피해”를 “인명피해 또는 시설물피해”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제1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제2호를 제1호로 하며, 같은 호(종전의 제2호) 중 “3명 이상이거나 사상자가 10명”을 “1명 이상이거나 부상자가 5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제3호를 삭제하며, 같은 조에 제1항제2호,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명피해 또는 시설물피해

② 법 제58조제4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”란 시설물이 붕괴·파손되거나 쓰러지는 등의 사고에 의해 발생한 피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명피해 또는 시설물피해를 말한

다.

1.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1명 이상이거나 부상자가 10명 이상인 인명 피해

2.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명피해 또는 시설물피해

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·도지사는 법 제6조제7항에 따라 시설물관리계획을 보고받거나 제출받는 시설물이 붕괴·파손되거나 쓰러지는 등의 사고에 의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명피해 또는 시설물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 제58조제5항에 따른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(이하 “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1. 부상자가 5명 이상 9명 이하인 인명피해

2.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·도지사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명피해 또는 시설물피해

제4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.

②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은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

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③ 위원의 임기는 제41조제4항에 따른 사고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날까지로 한다.

④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위원회의 의사(議事)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
⑤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17조의4 및 제17조의5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심의위원회”는 “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”로 본다.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시·도지사가 조례로 정한다.

별표 1 제1종시설물란의 제1호가목4) 중 “이상이고”를 “이상인 부분이 포함된”으로 하고, 제2종시설물란의 제1호가목3) 중 “이상이고”를 “이상인 부분이 포함된”으로 한다.

별표 3 비고 제3호 중 “제1종 및 제2종 시설물 중”을 삭제하고, 비고 제6호의2 및 제6호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의2. 정밀안전점검 결과 D등급(미흡) 또는 E등급(불량)으로 지정된 제2종시설물에 대해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은 해당 안전등급으로 지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. 그 결과, D등급(미흡) 또는 E등급(불량)으로 재지정된 경우에는 상기 표의 실시 주기에

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.

6의3. 준공 후 30년 이상이 경과된 시설물 중 C등급(보통), D등급(미흡) 또는 E등급(불량)으로 지정된 제2종 및 제3종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은 해당 안전등급으로 지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실시한다.

별표 10 제2호 중 “비파괴재하시험”을 “비파괴시험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.

1. 제10조제2항·제3항, 제18조의2, 별표 3 비고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 개정규정 : 2025년 12월 4일
2. 제19조 및 제40조의 개정규정 :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0조(정밀안전진단의 실시) ① (생략) <u><신설></u>	제10조(정밀안전진단의 실시) ① (현행과 같음) ② 법 제12조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종시설물”이란 정밀안전점검 결과 D등급(미흡) 또는 E등급(불량)으로 지정된 제2종시설물(건축물은 제외한다)을 말한다.
<u><신설></u>	③ 법 제12조제3항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으로 지정된 경우”란 C등급(보통), D등급(미흡) 또는 E등급(불량)으로 지정된 경우(건축물에 대해 해당 안전등급이 지정된 경우는 제외한다)를 말한다.
②·③ (생략)	④·⑤ (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)
<u><신설></u>	제18조의2(긴급안전조치 및 보수·보강 등 의무 대상 안전등급 기준) 법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”이란 D등급(미흡) 또는 E등급(불량)을

제19조(중대한 결함 등에 대한 보수·보강조치의 이행) 관리주체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법 제22조제1항·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시설물의 보수·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착수해야 하며,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착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를 완료해야 한다. <단서 신설>	말한다. 제19조(중대한 결함 등에 대한 보수·보강조치의 이행) ----- ----- 조치명령이 나 영 제18조의2에서 정하는 안전등급으로의 지정 ---- 1년 - ----- ----- 1년 ----- ----- . 다만,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거나 철거 후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기한 내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완료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제37조(피해 규모) 법 제58조제1항 및 제4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”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피해 또는 인명피해를 말한다.
	제37조(피해 규모) ① 법 제58조제1항----- ----- ----- 시설물이 붕괴·파손되거나 쓰러지는 등의 사고에 의해 발생한 피해 중 --- 인명피

1. 시설물이 붕괴되거나 쓰러지는 등 재시공이 필요한 시설물피해 2.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3명 이상이거나 사상자가 10명 이상인 인명피해 3.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피해 또는 인명피해 <신 설>	해 또는 시설물피해----- --. 1.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1명 이상이거나 부상자가 5명 이상인 인명피해 2.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명피해 또는 시설물피해 <삭 제> ② 법 제58조제4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”란 시설물이 붕괴·파손되거나 쓰러지는 등의 사고에 의해 발생한 피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명피해 또는 시설물피해를 말한다. 1.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1명 이상이거나 부상자가 10명 이상인 인명피해 2.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명피해 또는 시설물피해
---	---

<u><신 설></u>	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·도지사는 법 제6조제7항에 따라 시설물관리계획을 보고받거나 제출받는 시설물이 붕괴·파손되거나 쓰러지는 등의 사고에 의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명피해 또는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 제58조제5항에 따른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(이하 “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 1. 부상자가 5명 이상 9명 이하인 인명피해 2.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·도지사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명피해 또는 시설물피해
제40조(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·운영) 법 제58조제5항에 따른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(이하 “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·운영에 관하여는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국토교통부장관”은 “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	제40조(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·운영) ①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.

자치단체의 장”으로 본다. <u><신 설></u>	②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은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<u><신 설></u>	③ 위원의 임기는 제41조제4항에 따른 사고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날까지로 한다.
<u><신 설></u>	④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위원회의 의사(議事)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<u><신 설></u>	⑤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17조의4 및 제17조의5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심의위원회”는 “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”로 본다.
<u><신 설></u>	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시·도지사가 조례로 정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	
연 락 처	(044) 201 - 3587